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
----------	---

제출년월일 : 2018. 0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평창군 지명위원회 운영의 근거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위법성 해소 및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별지 제1호서식)

- (당초) 「측량법」 제58조 및 「측량법 시행령」 제35조
-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나. 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종전 조례에서 간사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고 규정한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제5항)

다.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단서의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안 제4조제1항)

라. 가부동수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부결되는 것으로 봐야함에 따라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단서 삭제(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8.5.10. ~ 5.29) 결과, 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완료

-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선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를 “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분류번호 :

수 신 : 도지명위원회위원장

(평 창 군)

20

발신 : 평창군지명위원회위원장

지명(제정, 변경, 기타) 보고

① 소재지	도 군 읍면			② 조사기간	20 ~ 20		③ 도엽명						
④ 위원회조정					⑤ 상급위원회 승인			20					
⑥ 정리번호	⑦ 행정구역명 (도,군,면,리)	⑧ 현재호칭되는지명			⑨ 지명의 종 류	⑩ 현지도의 표기내용	⑪ 직각좌 표	⑫ 지명의 유 래	⑬ 제 정	⑭ 조 정	⑮ 중앙지명위원회 결 정		⑯ 비 고
		A	B	C							한글표기	로마자 표 기	
		한글											
		한문											
		한글											
		한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첨 부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2. 심의회의록													
작성요령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호칭되는 지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 때는 사용빈도에 따라 A, B, C 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 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 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 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측량법 제 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u> 규정에 의하여 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② (생략)</p> <p>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u>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관계공무원</u> 2. <u>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u> 3. <u>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p>④ (생략)</p> <p>⑤<u>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u>되, 간사는 <u>문화관광과장이 되</u>며, 서기는 <u>군수가 소속 공무원</u> 중에서 임명한다.</p> <p>제4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u>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u></p>	<p><u>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 「<u>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p> <p>-----.</p> <p>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위원은 <u>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u> <u>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u>되, <u>위촉직 위원</u>의 경우에는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u>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u>되, <u>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u></p> <p>제4조(회의 및 의사) ① -----</p> <p>-----</p>

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
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
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
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

제5조(임기) -----
----- 하되, 한 차례
만 -----.

관계법령 발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6.11.>

③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지사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연락처	(033) 330 - 2250